

대학원 혁신 우수논문상 공모에 관한 지침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우리 대학원 학생의 우수논문을 선정·시상함으로써 내실있는 학문풍 토를 이루며 연구의욕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둔다.

제2조(심사대상)

- ①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논문 및 최종 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학위논문의 경우, 졸업 후 2개 학기 이내 선발에 응하는 것이어야 한다.
- ③ 학술논문의 경우, 최근 1년 이내에 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각 학과에서 제출하는 논문편수는 4편 이내로 한다.

제3조(선정부문)

- ① 대학원 혁신 우수논문상은 단과대학별로 매학기 각각 선정한다. 다만, 우수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각 학과는 심사를 거쳐 학과 우수논문과 장려상 논문을 대학에 추천한다. 학과 우수논문 중 각 대학은 단과대학 최우수논문 1편을 선정한다.
- ③ 각 대학은 단과대학 최우수논문, 학과 우수논문, 장려상 논문을 대학원에 추천한다.

제4조(구비사항)

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과 9월 중 1) 학과 자체평가서, 2) 지도교수 추천서, 3) 논문, 4) 논문요약 및 연구업적에 대한 목록, 5) 논문 표절 검사지, 6) 학과 심사보고서, 7) 대학 심사보고서, 8) 대학원 혁신 우수논문상 수상자 선정 회의록, 9) 논문발표 영상 제공 동의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※ 논문 표절률은 10%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, 10%를 초과할 경우 1) 소명서와 2) 소명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.

※ 제출한 소명서 및 증빙 서류로 소명이 부족할 경우, 해당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.

- ① 학과는 학과 심사 이후, 접수받은 서류들과 함께 학과 자체평가서를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대학은 최종 심사 이후, 평가 서류들과 대학장 추천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심사위원회)

- ①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과와 대학은 논문심사 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장은 학과장(대학원 주임교수) 혹은 대학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 다만, 추천된 학생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⑤ 각 위원회는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구분하여 단과대학 최우수논문과 학과 우수논문을 선정한다.
- ⑥ 대학장은 최종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고, 심사 서류 및 대학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

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심사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회의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한다.

제8조(인준)

대학원장은 각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대해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통지)

심사결과를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심사기간)

위원회는 매년 4월과 10월 중에 심사를 완료한다.

제11조(시상)

- ① 단과대학 최우수논문 및 학과 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며, 학적부에 수상 사실을 기재한다.
- ② 우수논문장려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총장명의로 상장을 수여한다.
- ③ 시상은 각 단과대학 혹은 학과에서 진행하며, 시상 시기는 매년 6월과 12월 중으로 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규정) BK종료기간(~2027년 8월 31일)까지 21.대학원 학생 우수논문 시상에 관한 내규 시행을 본 지침으로 대체 운영하며 2027년 9월부터는 기존 내규를 재개한다.